

# 베트남(Vietnam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1년 (공공부문 근로자)
- 현행법 : 2009년(노령), 2012년(장애자), 2013년(사회부조), 2014년(사회보험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  - ※ 2018년 12월 1일자로 특정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제도 하에 보장됨. 베트남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2022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임

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가사근로자를 포함한 최소 1개월 고용계약을 맺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; 농업, 어업 및 염전 근로자; 공무원; 협동조합 및 연합의 근로자; 경찰 및 군인; 공동체, 구, 군구의 시간제 근로자; 적법하게 베트남에서 근로 중인 특정 외국인
  - 임의 적용 : 의무적용이 없는 자영자 및 베트남 국민
- 사회부조 : 궁핍한 자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사회보험 : 총 월 가입소득의 8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임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의 20배임
    -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사회보험 : 신고가입소득의 22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지방 빈곤기준임
    - 지방 빈곤기준은 월 700,000 동(dong)임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의 20배
    - 공무원 법적 월 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  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월 임금지급총액의 14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공무원 법정월최저임금임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은 공무원 법정월최저임금의 20배임
  - 공무원 법정월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필요 시 보조금 제공; 1995년 이전에 퇴직한 자들의 노령연금의 총 비용; 사용자로서 기여함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(공동체, 구, 군구에서 거주하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최소 15년 이상의 가입기간)을 가진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
  - 최소 15년 이상의 광산 또는 위험하고 유해한 근로환경이나 특정 지역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55세 남성 또는 50세 여성 및 광부; 최소 15년 이상의 매우 위험하고 유해한 근로환경에서의 기간을 포함한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최소 61% 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되었을 시 연령무관
  -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졌으며 최소 61% 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51세(남성,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55세로 증가) 또는 46세(여성,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 50세로 증가)
  -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졌으며 최소 81% 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50세 남성 또는 45세 여성
  - 가입자가 근로환경에서 에이즈에 걸렸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 충족 시 연령 무관
  - 군인 및 경찰은, 최소 20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55세 남성 또는 50세 여성; 최소 15년 이상의 위험하고 유해한 근로환경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50세 남성 또는 45세 여성; 최소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졌으며 최소 61% 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50세 남성 또는 45세 여성
  - 근로는 중지되어야 함
  - 연금보조금 : 가입자가 최소 30년(남성) 또는 25년(여성)의 가입기간을 가졌다면 지급됨
- 노령수당(사회보험)
  - 20년 미만의 가입기간(공동체, 구, 군구에 거주하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15년 미만)을 가지고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60세 남성 또는 55세 여성

-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졌으며 최소 61% 이상의 근로능력불능으로 판정되었다면 연령무관
- 특정 질환으로 진단되었거나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역 군인 또는 경찰 이라면 연령무관. 영구적 국외 이민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며 12개월 이상의 보험료 미납 휴직 기간이 있었어야 함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60~79세로 빈곤하며 가족부양 없이 독거; 사회보험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80세 이상인 자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사회보험 노령연금 참고
- 장애수당(사회부조) : 최소 61%의 근로능력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사회보험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야 함
- 간병인 지원금(사회부조) : 최소 81%의 근로능력불능으로 판정된 사람들의 간병인에게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 - 사망자가 최소 15년의 가입기간을 가졌으며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을 자격이 있던 자, 또는 최소 61% 이상의 근로능력상실로 판정된 장애연금 수급 자였던 자. 급여는 최대 4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됨
 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60세 이상의 미망인 또는 공무원 법정월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55세 이상의 미망인(미망인(홀아비)의 판정된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일 시 연령무관); 18세 미만의 자녀(판정된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일 시 연령무관);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(판정된 근로능력 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일 시 연령무관) 부(60세 이상) 또는 모(55세 이상);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인 장인 또는 55세 이상인 장모 (판정된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일 시 연령무관)을 포함함
  - 공무원 법정월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- 유족수당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유족에게 지급됨
- 유족보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졌을 시 지급됨
- 장제비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았었거나 최소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가졌을 시, 장례식 비용을 지불하는 자에게 지급됨
- 장례 수당(사회부조) : 사망자가 60세 이상이며, 빈곤하며, 가족의 부양 없이 독거하고 있었을 경우; 80세 이상이며 어떤 다른 사회보험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았을 시; 판정된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61% 이상이며 어떤 다른 사회보험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았을 시; 또는 고아급여, 한부모 급여, 에이즈 수당, 장애아 수당(가족수당 참고)을 지급받고 있을 시 장례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급됨

## ○ 노령급여

## 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첫 16년 동안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45%가 지급(남성,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20년으로 증가) 또는 15년(여성)의 가입기간 + 가입자의 16년(남성,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20년으로 증가) 또는 15년(여성) 초과 가입기간 1년 당 월 평균가입소득의 2%이 지급됨. 가입기간 첫 16년(남성,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년) 또는 15년(여성)간 월평균가입소득액의 45% + 가입기간 첫 16년(남성,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0년) 또는 15년(여성)을 초과하는 가입기간에 대한 월평균가입소득액의 2% 지급
- 연금은 가입자의 근로능력상실로 일반퇴직연령 도달 전에 조기 수급하는 1년 당 월 평균가입소득의 2%씩 감액
- 민간 부문 근로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은 전체 가입기간에 근거함; 공무원의 월 평균 가입소득은 가입자가 언제부터 납부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5, 6, 8, 또는 10년의 가입기간에 근거함
- 월 최저 노령연금은 공무원의 법정 월 최저임금임
- 공무원의 법정 월 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.(2018년 7월)
- 월 최고 노령연금은 가입자 월 가입평균소득의 75%임
- 연금보조금 :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0.5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보험료 납부 30년(남성) 또는 25년(여성) 초과 1년 당 지급됨
- 급여조정 : 급여는 생활비 지수 변동과 경제성장에 따라 조정됨

## • 노령수당(사회보험)

- <2014년 이전 가입기간의 마지막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1.5배 + 2014년 이후 가입기간의 마지막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2배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민간 부문 근로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은 전체 가입기간에 근거함; 공무원의 월 평균 가입소득은 가입자가 언제부터 납부하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마지막 5, 6, 8, 10년의 가입기간에 근거함

## •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

- 60~79세, 빈곤하고 가족 구성원 없이 독거인 경우 시 월 405,000 동(dong)이 지급됨; 80세 이상일 시 540,000 동(dong);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이며 60세 이상일 시 월 1,080,000 동(dong);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이며 60세 이상인 빈곤한 자 일 시 월 1,080,000 동(dong), 또는 60세 이상이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할 시 지급됨

## 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됨.

## • 장애수당(사회부조)

-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61% 이상 81% 미만일 시 월 405,000 동(dong); 근로능력

상실정도가 최소 81% 이상일 시 월 540,000 동(dong);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81%이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거주 시 월 810,000 동(dong); 판정된 근로능력상실정도가 최소 61% 이상이며 3세 미만의 자녀 양육 중이거나 임신 중일 시 월 405,000 동(dong); 판정된 근로능력상실 정도가 최소 61% 이상이고 임신 중이며 3세 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 중이거나, 임신 중이 아니며 3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일 시 540,000 동(dong) 지급

- 재정능력이 우수한 지역은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
- 간병인 지원금(사회부조) : 한 명을 간병 중이라면 월 405,000 동(dong); 최소 2명 이상을 간병 중이라면 월 810,000 동(dong) 지급

## ○ 유족급여

### 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공무원 법정 월 최저임금의 50%가 각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됨; 유족이 보호자가 없다면 최대 4명의 유족까지 70% 지급함
- 공무원의 법적 월 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
### • 유족수당(사회보험)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2개월 안에 사망했을 시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48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. 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 당 50%씩 감액 지급
- 유족수당 최저금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3배에 해당함

### • 유족보조금(사회보험)

- <2014년 이전 가입기간 마지막 5년간 사망자의 월 평균가입소득의 1.5배 + 2014년 이후 가입기간의 마지막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2배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### • 장제비(사회보험)

- 공무원 법정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공무원 법정최저임금은 1,390,000 동(dong)임

- 장례수당(사회부조) : 5,400,000 동(dong)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## 7 관리운영기관

### ○ 노동장애사회부(Ministry of Labor, Invalids, Social Affairs)

- <http://www.molisa.gov.vn>
- 전반적 감독

### ○ 베트남 사회보장청(Vietnam Social Security):

- <https://baohiemxahoi.gov.vn/Pages/default.aspx>
- 보험료징수, 사회보험제도 감독, 제도 적용

<2018년 ISSA 자료>